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건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28
----------	-----

2024. 10. 18.(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문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장애인 보조건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을 하고 있음.

<참고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 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 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여가 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접수 및 언론 보도와 SNS⁵⁾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알려져,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자체 또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의 주요 대상자인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총 66,319명(지체 43,368 / 청각 14,282 / 시각 8,669)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 “보조견 욕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해라”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한 주인...피해 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 제기 → 인권위“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해소해야” (이데일리 보도 / 19.10.24.)
- 롯데마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논란...“사과 없을 땐 불매”(헤럴드경제 / 20.11.30.)
- 서울 목동 유명 식당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각종 SNS에서 공분 커져 (24.8.22.)

-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해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돕는 장애인 보조권의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도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본 조항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장애인 보조권의 출입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

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인식개선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외에도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출입보장에 참여하는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장애인 보조견 및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보장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임.
- 이러한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는 우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환경 조성은 장애가 없는 지역주민의 복리 개선 노력과도 같은 선상에서 추진될 수 있는 만큼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금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삭제 <2024. 1. 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2021. 7. 27.>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1. 사업개요

-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비용 제외 요인

- 충청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세부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검토의견

-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규모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함.

5. 작성자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영희